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29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지방재정법」 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,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